

4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관

구분	내용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사외이사들의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공정거래법 제26조) ①자금 ②유가증권 ③자산 ④상품,용역
기업집단현황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기업은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 ◆ 기업집단현황공시 세부 내용(공정거래법 제27조) ①회사현황 ②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⑥지주회사현황 ⑦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정위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 130조(과태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에 따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차등 부과 ◆ 공시 유형별 과태료 부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500만원 ~ 7,000만원 ②기업집단현황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1.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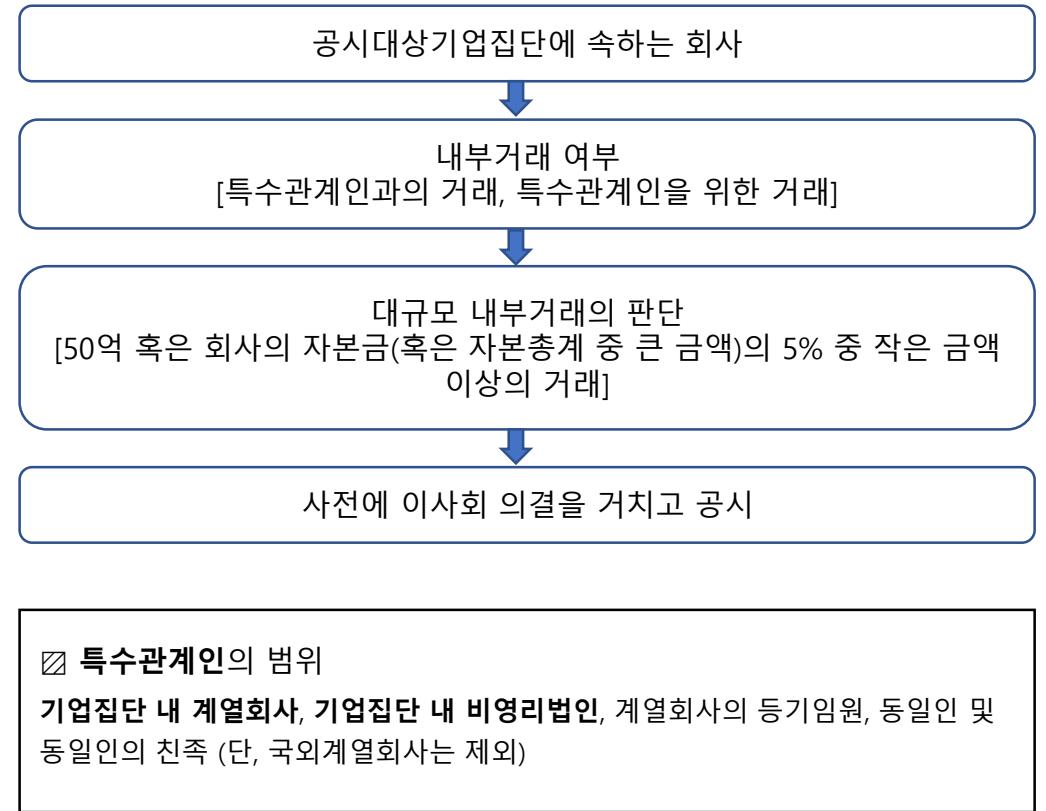
▶ (대규모)내부거래란?

- 계열회사간 적절한 내부거래는 거래효율 등 타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행위임. 그러나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위법한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우량 기업의 핵심역량 약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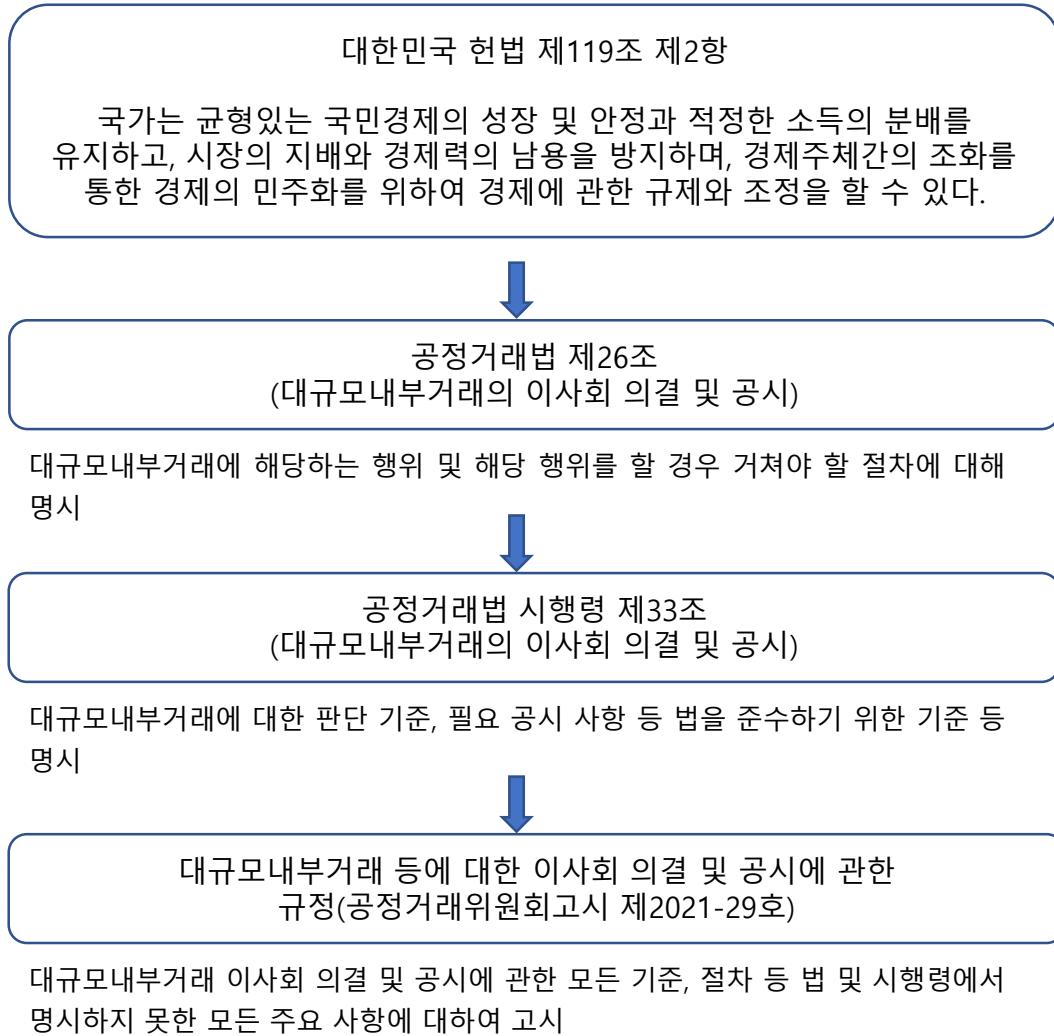
1.1.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의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장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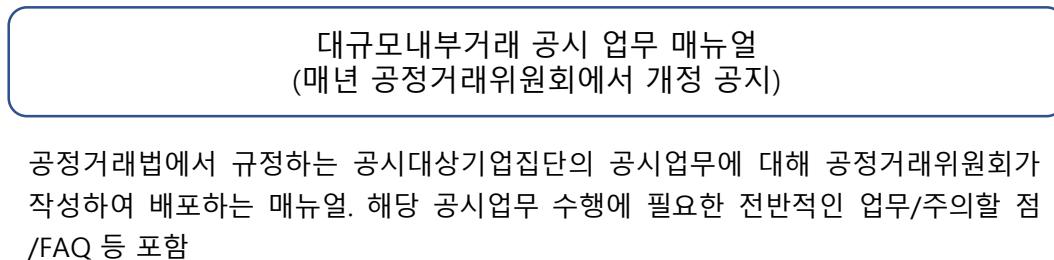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1.2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공시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는 공시의무가 없고,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한다.

1.3 주요 거래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3.1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금거래(예시)

자금보충약약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금의 대여 등 계열 회사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1.3.2 유가증권 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유가증권거래(예시)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등

1.3.3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산거래(예시)

부동산 임대차거래, 브랜드 사용거래 등

1.3.4 상품 또는 용역거래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만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양 당사자 모두 상품 또는 용역거래로 공시하여야 함

상품 또는 용역거래(예시)

계열회사로부터의 공사도급계약, 제품의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계열회사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제작 등

1.4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1.4.1 공시대상 거래규모

-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
-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50억을 기준으로 함

※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기재된 자본총계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1.4.2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판단기준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1.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2.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 수익증권을 동일한 판매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로써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1회 입금액이 50억 이상 일 경우 공시대상 1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함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1.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2.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분기별 합산 거래액(매출, 매입 포함)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의 산정 기준
 1.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 ②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③ 퇴직연금보험의 거래금액 :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①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예시)

-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단, 장 종료 후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1.5.1 이사회 의결에 관한 기준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이전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결방법)

- 이사회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통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사외이사 세명 이상 포함, 그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1.5.2 공시 방법(시기, 절차, 주요내용 등)

1. 공시의 기한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공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2. 공시의 절차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DART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3. 공시의 주요내용

-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아래 각 중요사항에 대하여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 거래의 목적
- 거래 대상
- 거래 상대방
- 계약체결 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거래 기간
-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 기타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 등

4.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①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 연장이 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 계약서 상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일 뿐, 거래기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②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 없음. (단,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검토 필요)
- ✓ 위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1.6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1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 변경

- 기 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하여야 함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필요
 - ※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 : 100% 금액의 변경
 -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특례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변경공시 필요

1.6.2 변경 사유에 따른 절차

• 거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공시만 필요

•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

- 계약기간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1.7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특례

▶ 특례의 도입 배경

-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 및 제공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함

1.7.1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기에 대한 특례

- 1년 거래기간 일괄 의결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음
- 분기 전 사전 미예측 거래 발생 시
 - ①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할 수 있음
- 분기 중 신규 계열편입이 된 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 ① 계열편입일로부터 분기 종료일까지 상품·용역의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1.7.2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례

-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①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할 수 있음
 - ※ 단,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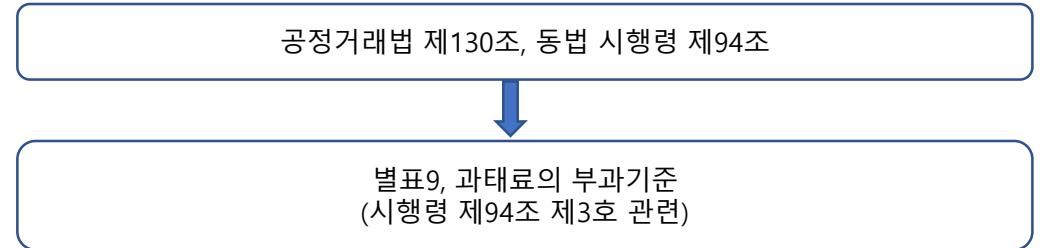
1.7.3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계약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 것)
-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면 됨

1.8 위반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②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이사회 의결 여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7,000

2.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2.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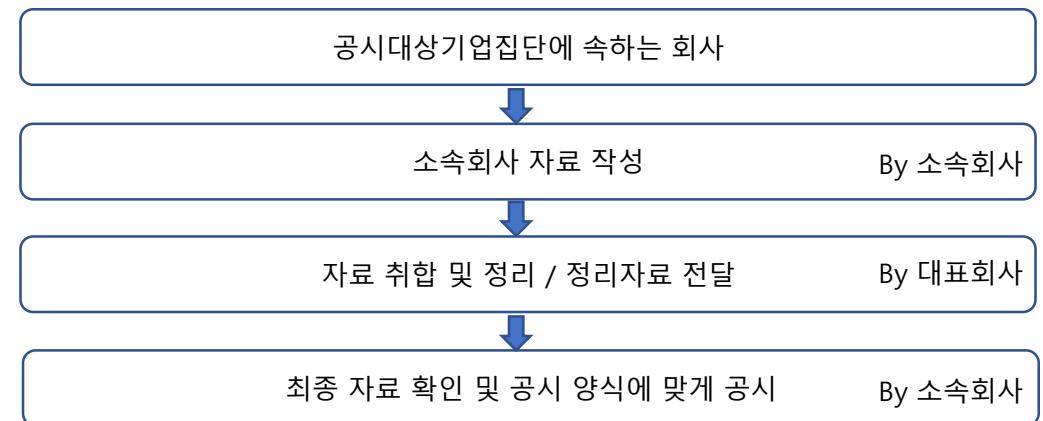
▶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분기별, 연1회 각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1.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 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항목별 세부 공시 사항 등 명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0호)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관한 모든 기준, 절차 등 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못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고시

③ 추가 참고 자료

기업집단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공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2.2 공시 주체

▶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2.3 기업집단현황공시의 내용

2.3.1 일반현황 (연1회)

- 회사의 개요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작성
 1. 회사 개요
 2. 회사 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3. 회사 손익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4. 국외 계열회사 현황
 5. 계열회사 변동 현황

2.3.2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 임원,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
 1. 임원현황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2.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 임원 :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임원, 즉 등기임원만을 말함

2.3.3 주식소유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소유지분,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등 당해회사의 지분구성과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작성 (단, 보유중인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은 제외)
 1. 소유지분현황 (연1회)
 2.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현황 (분기별)

2.3.4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1. 당해회사와 계열회사, 계열회사 이외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현황에 대하여 작성
 - ①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분기별)
 - ②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분기별)
 - ③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분기별)
 - ④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분기별)
 - ⑤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연1회) 및 거래내역 (분기별)
 - ⑥계열회사간 물류 IT서비스 거래 현황 (연1회)
 - ⑦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연1회)
 - ⑧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연1회)
 - ⑨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분기별)
 - ⑩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연1회)
 - ⑪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분기별)
 - ⑫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잔액 현황 (연1회)
 - ⑬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분기별)
 - ⑭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분기별)
 - ⑮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⑯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2.3.5 순환출자현황

1.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에 대하여 작성. 단,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
 - ①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연1회)
 - ②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분기별)

2.3.6 지주회사현황

1.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①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연1회)

2.3.7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1.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①금융, 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분기별)

2.4 공시의 방법 및 절차

2.4.1 공시 방법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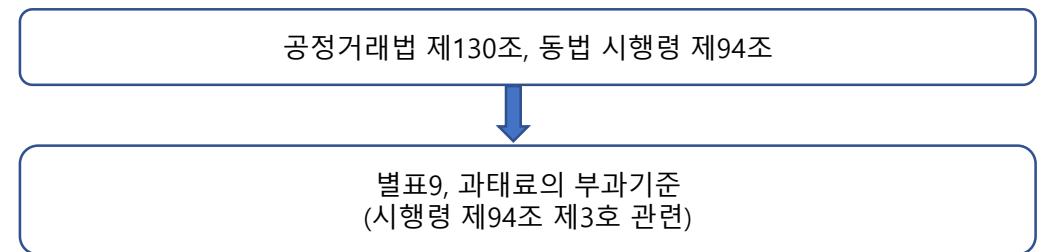
2.4.2 공시 절차 (당사기준)

- 공시시기 도래 시 공시 초안 자료 작성
- 공시 기한 도래 15일전 대표회사 검토 요청
- 대표회사 검토 완료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공시자료 작성
- 기한 내 DART 내 공시

2.5 위반 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② 기업집단현황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 의 다음 날부터 보완 을 마친 날까지 1일 마다 5만원씩 가산 하되, 5백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 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 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 의 다음 날부터 보완 을 마친 날까지 1일 마다 5만원씩 가산 하되, 1천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